

제 2010-40호

외국환업무 등록증

회사명 대구축산업협동조합

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645-4

위 기관은 외국환거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
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(외국환거래규정 제2-21조
제1호 해당업무)의 취급기관으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함.

2010년 5월 18일

기획재정부 장관

